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734호(號) 1929년(昭和 4) 6월 14일 金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09호(號)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철도성(鐵道省) 간(間) 및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경유(經由) 철도성(鐵道省),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依)한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당사(當社), 철도성선(鐵道省線)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止)함.

1929(昭和 4)년 6월 14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철도성(鐵道省) 간(間) 및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경유(經由) 철도성(鐵道省),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이하 국[局]이라 칭[稱]함)와 철도성(鐵道省: 이하 성[省]이라 칭함) 간(間) 및 국(局) 경유(經由) 성(省),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滿鐵]이라 칭함) 간(間) 화물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경우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제1조(條) 연대운송(連帶運送)의 취급(取扱)을 하는 역소(驛所)는 아래[左]와 같이 함. 단(但) 취급상(取扱上) 특수(特殊)한 제한(制限)이 있는 역소(驛所)는 그 제한(制限)에 의(依)함.

1 국(局)과 성(省) 간(間)

국(局) 각(各) 역(驛: 간이역[簡易驛] 및 부산역[釜山驛]을 제[除]함)

성(省) 각(各) 역(驛: 고지선[高知線], 작비동선[作備東線] 및 인미남선[因美南線] 각[各] 역[驛] 및 부산영업소[釜山營業所]를 제[除]함)

2 성(省)과 만철(滿鐵) 간(間)

성(省) 각(各) 역(驛: 고지선[高知線], 작비동선[作備東線] 및 인미남선[因美南線] 각[各] 역[驛] 및 부산영업소[釜山營業所]를 제[除]함

만철(滿鐵) 각(各) 역(驛: 단동역[安東驛]을 제[除]함)

(주[註])성(省)과 단동역(安東驛)과 연대(連帶)하는 경우 단동역(安東驛)은 국(局)의 한 역[一驛]으로 간주(看做)함.

제2조(條)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貨物)은 관계운구기관(關係運輸機關)에서 특(特)히 승인(承認)한 경우에 한(限)하여 그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함.

1 성(省: 오도마리항영업소[大泊港營業所]를 제[除]함)과 국광궤선(局廣軌線) 또는 만철(滿鐵) 간(間)

가 1개(箇)의 중량(重量) 3영국톤(英噸), 용적(容積) 3백(百) 입방척(立方尺), 또는 길이 소화물급(小貨物扱)에 있어서는 14척(尺: 성[省] 대절급[貸切扱]으로 연대하는 것 및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발착(發著)하는 것은 18척), 차급(車扱)에 있어서는 30척(尺)을 초과(超過)하는 것

나 국(局)이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양철[葉鐵]로 싸서 목제상[木製箱]에 넣은 안전한 성냥 및 국[局]이 정[定]한 포장[包裝]을 한 석유류[石油類]로서 갑판(甲板) 적재(積載)로 한 것과 말[馬]을 제[除]함

다 연락선(聯絡船) 또는 운송경로(運送經路)를 지정(指定)하여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및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2 성(省: 오도마리항영업소[大泊港營業所]를 제[除]함)과 국협궤선(局狹軌線) 간(間)

가 소화물급(小貨物扱)에 있어서는 1개(箇)의 중량(重量) 1영국톤(英噸), 용적(容積) 백(百) 입방척(立方尺), 길이 14척(尺), 차급(車扱)에 있어서는 1개(箇)의 중량(重量) 3영국톤(英噸), 용적(容積) 3백(百) 입방척(立方尺), 길이 30척(尺)을 초과(超過)하는 것

나 전호(前號)나, 다와 동일(同一)함

3 성(省) 오도마리항영업소(大泊港營業所)와 국(局) 또는 만철(滿鐵) 간(間)

가 한 개[一箇]의 중량(重量) 1영국톤(英噸), 용적(容積) 백(百) 입방척(立方尺), 또는 길이 소화물급(小貨物扱)에 있어서는 14척(尺), 차급(車扱)에 있어서는 25척(尺)을 초과(超過)하는 것

나 국(局)이 정(定)한 급외품(級外品: 양철[葉鐵]로 싸서 목제상[木製箱]에 넣은 안전한 성냥 및 국[局]이 정[定]한 포장[包裝]을 한 석유류[石油類]로서 성선(省線)을 소화물급(小貨物扱)으로 해서 갑판(甲板) 적재(積載)로 한 것과 말[馬]을 제[除]함

다 제1호(號)다와 동일(同一)함

제3조(條) 화물(貨物)은 각(各) 철도(鐵道) 각 어느 급(扱)에도 연대(連帶)의 취급(取扱)을 함. 단(但)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은 하기(下記)의 제한(制限)에 의(依)함.

1 성착(省著) 대절급(貸切扱)으로 연대(連帶)하는 것

시모노세키착(下關著) 8영국톤(英噸) 이상으로 함

기 타(其 他) 8영국톤(英噸)에서 10영국톤(英噸)까지, 13영국톤(英噸)에서 20영국톤(英噸)까지, 23영국톤(英噸)에서 30영국톤(英噸)까지. 단(但) 길이 18척(尺)을 초과(超過)한 것은 13영국톤(英噸), 길이 22척(拓)을 초과(超過)한 것은 16영국톤(英噸)을 최저(最低) 톤수로 함

2 성발(省發) 국차급(局車扱)으로 연대(連帶)하는 것

중량(重量) 30영국톤(英噸) 또는 용적(容積) 천8백 입방척(立方

尺)을 초과(超過)함을 득(得)하지 아니함

제4조(條) 운임(運賃), 할증(割增) 임금(賃金) 및 요금(料金)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게시(揭示)한 경우를 제(除)하고 각(各) 철도(鐵道)가 정(定)한 바에 의하여 각각 별도(別
 途)로 이것을 산출(算出)하여 병산(併算)함.

- 1 성발(省發)로서 국선(局線) 내(內) 차급(車扱)으로 연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형(小型)
 대차(貸車)에 대한 운임계산최저톤수저감(運賃計算最低噸數低減)의 규정(規定)에 이것
 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貨物)의 중량(重量)은 그 1개(箇)를 하기(下記)의 근수
 (斤數)에 의(依)해 취급(取扱)을 하는 것으로 함

품	종(品種)	포	장(包裝)	1개(箇)의 근량(斤量)	기	사(記事)
방 적 면 사(紡績綿絲)	40통[玉]	포로 짜고 쇠테로 묶은 꾸러미[布包帶鐵締]		330근(斤)		
	20통[玉]	대로 묶은 꾸러미[筵包]		167근(斤)		
신문용지(新聞用紙: 두루말이[捲取])	540파운드(磅)	대로 묶은 꾸러미[筵包]		450근(斤)		
소 맥 분(小麥粉)	5관(貫)9백돈[匁]	포 대 들 이[袋]	시	37근(斤)		
백 미(白米: 조선산[朝鮮産]에 한[限]함)	4두(斗)	가 마 니 들 이[俵]	시	103근(斤)	(성[省], 만철[滿鐵] 실근량[實斤量])	
동(同)	4두(斗)	자 루 들 이[俵]	시	105근(斤)		
현 미(玄米)	4두(斗)	가 마 니 들 이[俵]	시	105근(斤)	(성[省], 만철[滿鐵] 실근량[實斤量])	
		자 루 들 이[俵]	시	105근(斤)		
대두(大豆: 조선산[朝鮮産]에 한[限]함)	동(同)	가 마 니 들 이[俵]	시	96근(斤)	(성[省], 만철[滿鐵] 실근량[實斤量])	
사 탕(砂糖)	100근(斤)	간 단 한 꾸 러 미[安 平]	포	105근(斤)		
	50근(斤)	포 대 들 이[袋]	시	51근(斤)	(성[省], 만철[滿鐵] 실근량[實斤量])	
맥 주(麥酒) 사각형(四角形)의 대(大)병(瓶)		상 자 들 이[箱]	시	128근(斤)		
시 멘 트(cement)	150kg(斤)	나 무 통 들 이[樽]	시	305근(斤)		
	85kg(斤)	동(同)		155근(斤)	(성[省] 실근량[實斤量])	
	50kg(斤)	포 대 들 이[袋]	시	97.5근(斤)		
간 장[醬油]	9승(升)	나 무 통 들 이[樽]	시	40근(斤)		
콩 깻 목(豆粕)	큰통[大玉]	비포장[裸]		46근(斤)		
소 금[鹽]	100근(斤)	자루(袋) 또는 가마니 [俵]	들[시]	103(斤)		
	80근(斤)	동(同)		83(斤)		
	50근(斤)	동(同)		52(斤)		
	40근(斤)	동(同)		42(斤)		

- 3 군마(軍馬), 총포(銃砲), 탄약(彈藥), 양식(糧食), 피복(被服), 진영 도구[陣具], 공병용
 괘이[工鍬], 병기구(兵器具), 천막(天幕) 등의 군수품(軍需品)을 공용(公用)을 위해 운
 송할 경우에 있어서 공용인 것의 증명서(證明書)을 제출(提出)한 때는 운임(運賃: 항로
 [航路]를 제[除]함)은 보통운임(普通運賃)에서 5할(割)을 저감(低減)함
- 4 성착(省著) 말[馬]에 대한 동선(同線) 내(內) 철도운임(鐵道運賃)은 1구(口)4두(頭)까지
 의 경우는 표기(標記) 용적(容積) 톤수(噸數) 8톤(噸), 5두(頭) 또는 6두(頭)의 경우는
 동(同)13톤(噸)의 화차(貨車)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計算)함. 단(但) 4두(頭) 이
 내(以內)의 경우라도 해도 하송인(荷送人)의 청구(請求)에 의(依)해 표기(標記) 용적(容
 적) 톤수(噸數) 13톤(噸)의 화차(貨車)를 사용할 때는 그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함
- 5 만철선(滿鐵線) 내(內)를 1차급(車扱)으로 하여 운송(運送)하는 연대화물(連帶貨物)에 대
 하여는 동선운임(同線運賃)에서 1미국톤[米噸] 당(當) 금(金) 25전(錢)을 저감(低減)함

- 6 할증임금(割增賃金) 계산(計算)의 경우, 성선(省線) 내(內)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의 영업 마일수(mileage·이정(哩程)를 통산(通算)함
- 7 국(局)이 정한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또는 급외품 제2종(種) 위험품(危險品)을 다른 품명(品名)에 의해 탁송(託送)한 경우에 부가(附加)해야 할 할증운임(割增運賃)은 각(各) 철도(鐵道) 각각 별도(別途)로 이것을 계산(計算)하지 아니하고 각 철도(鐵道)를 통합(統合)하여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8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제5조(條) 우메다(梅田) 및 미나토가와(湊川) 발(發)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 착불금(著拂扱) 화물(貨物)에 대하여는 하송인(荷送人)의 의뢰(依頼)에 의(依)해 물(物)의 인도(引渡) 때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과 함께 수하인(受荷人)으로부터 수수(收受)함.

제6조(條) 화물의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應)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의 착불(著拂)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이 경우에 있어서 원(原)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을 착불(著拂) 취급(取扱)을 한 것일 때이면 지도(指圖)의 청구(請求)에 응한 때 청구자(請求者)로부터 이것을 수수(收受)함.

제7조(條) 국(局), 성(省) 간(間) 발착화물(發著貨物)에 대하여는 양(兩) 철도(鐵道)가 정(定)한 바에 의해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상환수수료(代金相換手數料)는 발(發)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만을 수수(收受)함.

제8조 성발(省發) 단동착[安東著] 화물은 하송인(荷送人)에게 있어서 아래[左]의 조건(條件)을 승낙(承諾)한 때에 한(限)해 그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함.

수하인(受荷人)에게 있어서 본(本) 화물(貨物) 도착(到着) 후(後) 30일 이내(以內)에 인도(引渡)에 응(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송인(荷送人)의 비용(費用)으로써 발역(發驛)에 반환(返還)함.

제9조(條) 연대화물(連帶貨物)에 관한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관계운수기관(官階運輸機關)은 연대하여 배상(賠償)의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함.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최고액(最高額)은 손해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가 속하는 운수기관(運輸機關)이 정(定)한 바에 의(依)함. 단(但) 손해의 원인을 야기한 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액(額)의 큰 것에 의(依)함.

제10조(條)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12조(條), 제15조(條)에서 제17조까지, 제20조(條), 제24조(條)제1호(號), 제3호(號), 제5호(號), 제6호(號), 제40조(條), 제41조(條), 제46조(條), 제76(條), 제77(條), 제79(條), 제85(條)의 규정은 연대운송의 경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단(但) 만철(滿鐵)에서 청구(請求)를 받은 화물(貨物)의 발역(發驛)으로의 송환(送還), 수하인(受荷人)의 변경(變更), 착역(著驛)에 있어서 인도(引渡)의 금지(禁止) 혹은 그 해제(解除)에 대하여는 동(同) 규칙(規則) 제79(條)의 지도수수

료(指圖手數料)에 관한 규정은 이것을 준용(準用)하지 아니함.

제11(條) 각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운송에 관한 제(諸) 규칙(規則)은 본(本) 규칙에 저촉(抵觸)되지 않는 한(限) 연대운송에 대해 각 그 소관(所管) 내(內)의 운송에 대하여 효력(效力)을 가짐.